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1. 12. 27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11월 26일 이천시장 제출
나. 회 부 일 자 : 2001년 11월 26일
다. 상 정 일 자 : 제51회 이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
제3차(2001. 12. 26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심평수)

가. 제안이유

○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자문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이천시지역보건의료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로 통합 운영하여 시민이 다같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천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에 관한 자문 등 위원회의 세부기능을 정함(안 제2조)

○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해수)

○ 본 개정안은 기능이 유사하고, 운영 실적이 미흡한 이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포함 추가 개정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

○ 폐지하고자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규정사항이 개정조례에 추가하여, 개정안으로 규정하고 있고, 폐지조례안에서 이미 위촉한 위원 총11명도 개정안 조례 위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, 본 개정조례에서 특이 사항은 없으나,

○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 통합하므로써 시민건강생활실천증진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오해의 소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 음